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83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김도읍・구자근・김예지

신동욱 • 권영진 • 서지영

인요한 • 박정훈 • 조지연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제14조의2 및 제24조제4호).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과 사용 기계·기구"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레이저 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6 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레이저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레이저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레이저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제4호 중 "제14조제2항에"를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 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	 0 1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	
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	
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	
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	
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	
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	
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6
약도를 <u>포함한다)</u>	<u>포함한다)과 사용 기</u>
	계·기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4조의2(레이저 등 사용의 제
	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한다.

- 1. ~ 3. (생략)
-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4.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 부・방해한 자
- 5. (생략)

<u>자는</u>	<u>:</u> 제(5조제	1항	의	신고	서에
기자	되지	아니	한	방밭]으로	. 레
이자], 영/	사기(I	映寫	機)	등의	フ]
계 •	기구(이하	0]	조	에서	"레
이자	등"	이라	한1	구)를	를 사	용하
여	공공의	- 기 안	녕질	서를	를 해.	치거
나	타인이	에게	피해	를	주어.	서는
	된디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 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레이저 등 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레이 저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테24조(벌칙)	
1 이 / 뉛	케크 기수

- 1. ~ 3. (현행과 같음)
- 제2항에-----
- 5. (현행과 같음)